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買受人의 物品檢査時期

오 원 석*

-
- I. 問題의 提起
 - II. 檢査時期의 決定法理
 - III. 檢査時期에 관한 國際 및 國內法의 立場
 - IV. 檢査時期와 INCOTERMS
 - V. 示唆點
-

I. 問題의 提起

국제물품매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이 매입한 물품이 賣買契約의 品質條件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不一致를 이유로 행사할 取消權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즉 매수인이 매도인의 契約違反에 따른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物品檢査가 매수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물품검사를 위하여 수출지에서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품질검사를 행하여 검사에 합격된 물품만 선적한다면 검사시기에 관한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나 이것은 격지자 거래인 무역의 성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매도인은 수출지에서 선적 전에 검사하기를 원하는 반면 매수인은 수입지에서 물품을 검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매매당사자 사이에 검사시기에 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 논자는 매매당사자 사이에 검사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사시기는 매매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국제적인 통일법으로 자리를 잡아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가고 있는 UN統一賣買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CISG의 전신인 헤이그협약(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by Goods ; ULIS)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과 영국의 물품매매법(Sale of Goods Act ; SGA) 및 우리나라의 민상법 등과 CISG를 비교·검토하며 英·美 判例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품의 검사시기는 하지통지시기 및 매수인의 契約取消權의 행사 등의 법률적 효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무역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매수인의 입장, 즉 수입상의 입장에서 수입물품의 검사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검사시기는 매수인의 통지의무와 직결되기 때문에 검사시기와 통지의무를 종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는 契約不一致 가운데 물품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不一致만을 언급하며 權利側面에서의 不一致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법리상 검사시기는 引渡時期와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品質의 기준시기와도 일치한다. 검사시기와 계약서상의 담보기간과의 관계에서 검사결과 나타난 契約違反과 擔保違反과의 效果의 차이도 검토하므로 검사시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法理的 쟁점 상호간의 문제에 관하여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도 一助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檢査時期의 決定法理

1. 引渡時期와 檢査時期의 一致

매수인은 원래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전될 때 물품이 계약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국제거래에서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시기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¹⁾ “所有權”이란 개념 대신

1) 同時履行條件에서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소유권의 이전시기가 명료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물품이 운송인을 통한 간접인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금지급도 은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

“引渡”(delivery)란 개념을 사용하므로 인도시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²⁾ 국제거래에서 인도시기는 별도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한 통상 매매관습인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면 현물인도조건인 FOB 조건의 경우 선적항의 본선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며, 서류 인도조건인 CIF의 경우,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의 물리적 인도가 이루어지나³⁾, 현물매매와 서류인도라도 특수한 계약적 성격 때문에 서류의 인도가 이루어져야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Arnhold Karberg & Co. v. Blythe, Green, Jourdain & Co.* 사건⁴⁾에서 Warrington 판사는 “CIF 계약에서 인도는 첫째,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고 다음에 선적서류를 인도하므로 이행된다.”고 판시했다. 즉, 매매의 본질은 물품이지만 인도의 이행방식은 서류이기 때문에 인도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중복된 의무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가지 정형거래조건 가운데 “E” Group, “F” Group 및 “C” Group이 모두 선적지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인도시에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적지까지 와서 검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선적지에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매매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인도시기와 상관없이 검사시기를 도착지로 하기를 원할 것이다.

결국 검사시기를 인도시기로 본다는 추정은 당사자의 약정, 매매의 환경 또는 매매관습 등으로 인하여 바뀌어지게 된다. *Compagnie Commerciale Sures et Denres v. C. Czarnikow Ltd.* 사건⁵⁾에서 Bailhache 판사는 “검사장소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2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이 계속 운송된다는 것을 들었거나 추론을 통하여 알고 있어야만 하며, 그가 인도할 장소는 검사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물품의 포장이나 성질로 보아 인도장소에서의 검사가 불합리해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결국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선적전 검사와 같이⁶⁾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물

시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所有權”이란 개념 대신 “引渡”란 개념을 사용하여 “引渡”를 “危險의 이전”과 연계시키고 있다.

2) Leo D’Arcy, C. Murray and B. Cleave,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2000, p.89

3) INCOTERMS 2000, CIF A4

4) (1916) 1 K. B. 510

5) (1991) 1 Lloyd’s Rep. 29

6) *Saunt v. Belcher and Gibbons* (1920) 26 Com. Cas. 115 at 119.

품의 검사는 그것이 최종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기되며, 바로 최종목적지가 합의된 검사장소로 추정되어야 한다.⁷⁾ 최종목적지의 경우 물품이 양륙된 부두나 양륙후 물품이 옮겨지는 세관은 물품을 검사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검사장소는 매수인이나⁸⁾, 계약이행에 있어 매수인의 대리인의 영업구내가 검사장소가 된다. 만약 최종목적지가 내륙에 위치하고 물품이 양륙 후 그곳으로 이동할 경우 의도된 검사장소는 그 최종목적지가 검사장소가 될 것이다.

2. 品質基準時期와 檢査時期의 一致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은 계약의 품질조건과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상 품질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인도되는 물품의 품질이 계약의 기준이 되는 품질과 일치하는 품질의 기준시기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기준시기가 바로 물품이 계약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시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검사시기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통상 품질의 기준시기는 검사시기가 되어야 하며, 품질의 검사시기를 정하는 계약의 품질조건(quality terms)에 바로 검사시기, 검사장소, 검사기관 및 검사방법 등이 명기된다.

예를 들면, "The Inspection by the inspection standard and procedures of the Manufacturer or the Seller, unless otherwise instructed by the Buyer,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in respect of quality and for conditions of the merchandise.

In case the Buyer requires special inspection by appointment, the Buyer shall inform the Seller of the name of such inspector to inspect the merchandise in Korea prior to shipment within 14 days after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case the Buyer's such appointment does not make in time, the Seller's system of inspec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hereto and such inspection shall be for the account of the Buyer".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조업자 및 매도인의 검사기준 및

7) *Kwei Tek Chao v. British Traders and Shippers Ltd* (1954) 2 Q. B. 459 I 440

8) *B&P Wholesale Distributors v. Marsk Ltd*. The Temies Feb. 20, 1953

수속에 의한 검사는 제품의 품질 및 상태에 관하여 최종 및 결정적인 것이 된다. 매수인이 지정에 의하여 특별한 검사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적 전에 한국에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이름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러한 지정을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검사방법이 최종적이며 계약당사자는 구속하여야 하고 그러한 검사료는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法理上 품질의 결정시기와 검사시기가 같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달리할 수 있다. 매수인이 품질의 결정시기를 수출지로 하면서도 검사는 수입지에서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검사 후 품질불일치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한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 기준시기에는 품질의 기준과 일치했으나 운송도중에 손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므로 자신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매수인은 운송중 손상된 물품에 대하여 운송인이나 보험자를 상대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檢査時期와 契約上の 擔保期間과의 關係

물품의 검사시기는 통상 계약상에 명기하지 않으며, Claim 조항에서 클레임의 제시기가 명기된다. 매수인이 물품의 계약불일치를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적어도 계약에서 정해진 클레임의 제기기간 내에 검사를 끝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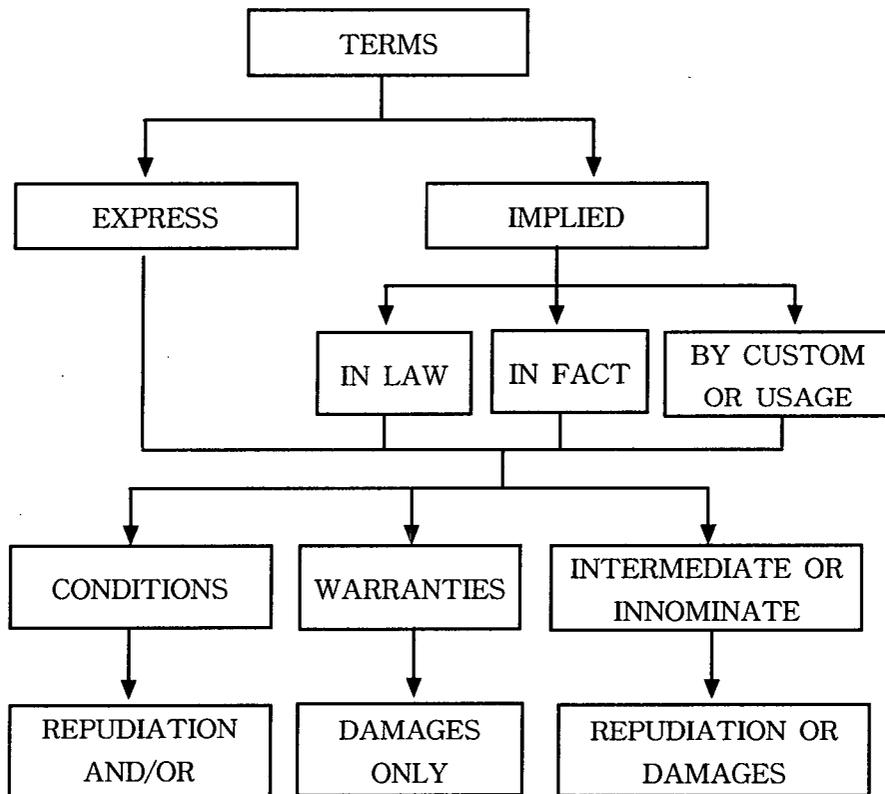
물품의 검사결과 계약불일치가 발견되고 그것이 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매수인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매도인에게 取消을 요구할 수 있다.

CISG에서 매수인에게 부여한 구제방법은 履行請求權(제46조 제1항), 추가기간지정권(제47조 제1항), 代替物品引渡請求權(제46조 제2항), 瑕疵補完請求權(제46조 제3항), 代金減額請求權(제50조), 契約解除權(제49조), 및/또는 損害賠償請求權(제74조~제7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契約解除權은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根本的 違反(fundamental breach)⁹⁾에 이르거나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때 행사될 수 있다. 또는 損害賠償請求權을 언급한 다른 구제수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9) CISG 제25조에서는 “근본적 계약위반” 정의하기를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근본적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賣買契約에는 擔保條項(Warranty Clause)이 있고 여기에는 통상 담보 기간 명기된다. 만약 매도인이 擔保期間內 자신이 담보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擔保違反(breach of warranty)이 된다.

이러한 담보위반에 대하여 CISG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영국물품매매법 (Sale of Goods Act(1979); SGA)에는 계약해지(repudiation)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권만 허용하고 있다.¹⁰⁾



10) N. Kouladis, Principles of Law Relating to Overseas Trade, Blackwell Business, 1998, p.25

결국 계약서상의 검사기간과 담보조건에서 담보기간은 별개이다. 전자는 Claim 조항과 연계되며 불일치물품에 대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담보위반은 권리구제가 손해배상권에 제한된다는 것이 영미법의 법리이다.

계약위반과 담보의 위반에 대한 법적효력을 英法을 중심으로 도해하면 위와 같다.¹¹⁾

4. 檢査時期에 관한 明示

국제무역거래에서 위험의 이전과 연계된 인도시기를 검사시기로 보는 것이 법리에 맞지만 많은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검사시기를 인도시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먼저 매도인의 입장에서 제조업체, 자국의 행정기관 또는 자신이 선적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최종으로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자신의 손을 떠난 물품이 향후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의 검사결과로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선적지 검사인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검사방법은 매우 부담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사전통지와 비용부담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를 원할 것이다.

“Export inspection by XXX Authority, manufactures or the Seller shall be considered as conclusive and final. When the Buyer appoints special inspector, Buyer must inform Seller of the appointed inspector, in advance and bear all inspection expense”.

(XXX 당국, 제조업자 또는 매도인에 의한 수출감사는 결정적이며 최종적인 검사로 간주되어야 한다. 매수인이 특별검사를 지정할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발견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기를 원하거나, 업계의 관행에 따라 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목적지에서 검사하기를 원할 것이다. 매도인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을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내용을 Claims 조항에 들 것이다.

“The Buyer is entitled to make an examination of quantity and quality of

11) N. Kouladis, op. cit., p.25

the goods at the port of discharge and to lodge the first claim by cable with the Seller as soon as possible, if the Buyer finds any defects in the goods. Within XXX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said port, the Buyer shall make a formal claim,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Unless such notice shall be given to the Seller within the specified period in the said manner, the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claim”.

(매수인은 양륙항에서 물품의 품질과 수량을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물품에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속히 전보로 1차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양륙항에 물품이 도착한 후 XXX일 이내에 매수인은 공인된 검정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식적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그러한 통지를 위에 언급한 방법대로 특정된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클레임 제기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국 法理的으로 볼 때, 檢査時期는 引渡時期와 같아야 하지만 契約自由의 原則에 따라 그 시기를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매매당사자 가운데 매도인은 선적시를 매수인은 도착시를 검사시기로 하기를 원할 것이다.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도착시를 검사하기로 정할 경우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이에 대한 證據책임이 있다.

Ⅲ. 檢査時期에 관한 國際 및 國內法の 立場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시적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 관습에 따르고, 이에 관한 매매관습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準據法에 따라 검사시기가 결정된다. 준거법의 선택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영업지가 위치한 국가가 체약국인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될 수 있으나, 양국이 비체약국이거나 법정지의 國際私法 原則에 따라 결정된 특정국가 비체약국인 경우에는 특정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검사시기에 관하여 CISG의 입장 및 영국의 SGA, 미국의 UCC

그리고 우리나라의 民·商法の 입장을 비교 하고자 한다.

1. CISG의 입장

1) CISG 제38조의 입법배경

검사시기에 관한 CISG 제38조는 ULIS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ULIS 제38조는 검사시기에 관하여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ULIS 제38조 제2항에는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컨테이너운송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서 매수인이 전매를 위하여 밀봉된 캔이나 상자를 구매하는 경우나 대량화물의 신속한 분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도착터미널에서 검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할 기회를 갖기 전에 매수인의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 CISG에서는 ULIS 제38조를 보다 유연하게 개정하여 현재의 상관습과 모순을 없게 하였다.¹²⁾

1980년 CISG 협약을 최종 확정함에 있어 고려한 점은 운송중에 목적지가 바뀌거나 전송(redispach)으로 인하여 운송기간이 늘어나고 이를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면 그 기간만큼은 검사기간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CISG 제38조와 檢査時期

제38조 제1항은 “매수인은 그 사정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신속한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제39조 불일치에 대한 통지조항의 사전단계이다. 신속한 통지는 매도인이 견본을 취하거나 물품의 상태에 관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다. 때로는 신속한 통지가 매도인이 하자를 보완하거나 매수인의 불평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금할인 등의 제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12) C.M. Bianca & M.J. Bonell et 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Convention, GIUFFRÉ · MILAN, 1987, p.295 : ULIS 제38조 제2항은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 반면 CISG 제38조 제2항은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로 수정되어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제1항에서 검사시기를 “사정에 비추어 실행가능한 짧은 기간내”(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로 정한 것을 CISG의 다른 조항¹³⁾의 “상당한 기간내”(within reasonable time)의 의미보다 더 신속성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⁴⁾ 그렇지만 검사를 “즉시”(immediate)하도록 할 경우 유연성이 결여되어 실용적이지 못하다.

제2항은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물품에 대한 통상적인 위험이전 시기와 검사시기가 무관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의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전송될 경우 그리고 그 가능성을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알았거나 알아야만 했을 경우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검사가 연기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수인이 재판매시 신속한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CISG 제38조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ULIS 제38조 4항, 즉 “검사의 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법이나 관습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 이유는 검사의 방법이 국제무역에 적용되는 관습과 다른 국내거래관습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¹⁵⁾

3) 검사시기와 통지의무

앞의 제38조 매수인의 물품의 검사시기는 불일치¹⁶⁾에 대한 통지의무(제39조, 제40조, 제44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39조는 통지시기와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와 제44조는 제39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는 제1항에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를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여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불일치 내용을 명세하여 이를 매도인에

13) CISG Arts. 33(c), 39(1), 43(1), 47(1), 48(2), 49(2), 63(1), 64(2)(b), 65, 75, 79(4), 88(1).

14) J.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1990, p.329

15) P. Schlechitriem,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sche, 1986, p.69

16) 여기서 “불일치”의 개념은 CISG 제35조가 정의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는 수량, 품질, 명세 및 포장 등이 포함된다.

게 상세하게 통지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물품의 불일치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통지시기에 관한 최대한의 제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in any event) 2년을 넘을 수 없으나 유일한 예외는 계약상의 담보기간과 양립되는 경우이다.

CISG 제39조는 만약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물품 불일치에 관한 통지를 하지 못하면 “불일치를 원용한 권리를 상실한다”(lose the right to reply on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로 규정하여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구제, 즉 손해배상청구, 이행청구, 계약해제 및 대금감액 등의 권리를 모두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39조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 규정되어 있다. 제39조의 엄격한 규정에 대한 예외가 제40조와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40조는 물품의 불일치를 매도인이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가 없었고 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경우이다.

또한 제44조는 매수인이 고지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2. SGA와 영국판례의 입장

매수인의 물품의 검사시기를 인도시기와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목적지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CISG 제38조와 유사한 조항이 SGA에는 없다. 그렇지만 SGA 제34조 제1항에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고, 또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검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¹⁷⁾ 매수인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검사의 기회를 갖기까지는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목적지에의 검사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기까지는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정은, 만약 당사자간 약정이 있거나 매매 또는 거래관습이

17) PSI(pre-shipment inspection; 선적전 검사)로 불리는 검사제도는 주로 독립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 선적전 검사는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손해가 위협개시전인지 후인지에 관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제도이다(Leo D'Arcy, Carole Murray & Bareara Cleave, Schmitt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p.80)

당사자의 의도가 다름을 나타낸다면 바뀔 수 있다.

B.&P. Wholesale Distributors v. Marko Ltd 사건¹⁸⁾이 인도장소가 연기된 대표적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Pearson 판사는 “SGA 제34조의 진정한 의미는 물품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가능하여야만 하고 매수인이 그러한 기회를 갖기까지는 제35조에 규정된 ‘인도’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출입거래에서 검사장소와 시기는 종종 인도장소와 인도시기가 아니고 연기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장소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FAS, FOB, CFR 및 CIF 등이 모두 해상운송을 포함하고 있고 인도장소가 수출지지만 매수인은 실제로 수출지에서 물품을 검사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SGA는 물품검사를 물품인수의 停止條件(condition precedent)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매수인은 물품검사를 위한 상당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러한 기회를 갖기까지는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할 것인지 검사권리를 포기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매수인이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였다면 매수인은 물품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검사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로 운반하도록 명령한 매수인은 수개월 후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물품을 거절한 것을 통보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물품을 보유한 것은 물품의 인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¹⁹⁾ 물품의 검사장소가 인도장소이거나, 최종목적지이거나 관계없이 검사장소에 물품이 도착하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한편 물품이 잠재하자를 갖고 있어, 검사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검사하는 기술이 있어도 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²⁰⁾ 그러한 하자에 관한 검사는 이를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시기까지 연기된다. 만약 그러한 하자가 사전검사시가 아닌 물품의 사용 시에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매수인은 여전히 하자 발견시 물품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그 때 매수인은 물품을 상당한

18) The Times, Feb.20, 1953

19) SGA Art. 35(1) : The buyer is deemed to have accepted the goods ... or when after the lapse of a reasonable time he retains the goods without intimating to the seller that he has rejected them.

20) Per Brett J. in Heilbutt v. Hickson(1872) L.R. 7 C.P. 438 at 456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지 말았어야만 한다.²¹⁾

SGA는 CISG 제38조와 제39조와 같이 매수인의 검사시기와 통지의무의 조합과 같은 조항은 없다. 다만 검사를 포기한 매수인은 물품거절권은 상실하지만 그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박탈당하지는 않는다.²²⁾

3. UCC의 입장

UCC는 영국의 SGA가 매수인의 검사포기 및 통지의무위반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물품거절권을 금하면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한 접근방식에서 이탈하였다.²³⁾

즉 UCC 제2-607조 제3항은 “물품의 제공이 수락된 경우 ... (a) 매수인은 계약위반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²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제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물품의 검사시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CISG 제39조와 같이 신속한 통지의무를 부여하므로 그 자체 검사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民·商法の 입장

CISG에서 매도인의 불일치물품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다. 매수인이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물품검사의무(제38조)와 통지의무(제39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무가 아닌 권리유지를 위한 간섭의무라고 할 수 있다.

21) *Bernstein v. Pamson Motors (Golders Green) Ltd.* (1987) 2. All E.R. 220

22) SGA(1893) Arts. 33, 34 (J.O. Honnold, op. cit., p.330)

23) UCC는 Uniform Sales Act(1906) Art.49를 기초로 매수인이 하자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하자사실을 통지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허용하고 있다.

24) “지체없이”(한국 상법 제69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before the lapse of a reasonable time)(SGA 제35조),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UCC 제2-607(3)조)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볼 것이냐는 사실의 문제(the question of fact)(SGA 제56조)이다. 따라서 이는 개별적 거래의 내용과 목적물의 성질, 거래의 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물품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및 기타 주위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법은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고, 다만 일반의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제582조) 또는 1년(제574조)내에 담보책임을 묻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상법 제69조에서 매수인의 목적물책입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이 때 만약 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이를 발견하여 통지하면 된다.

동 상법 제69조에서 “하자”는 물건의 하자(민법 제580조)를 말하며 “권리의 하자”(민법 제570조, 제573조, 제575조 내지 제577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체없이”는 검사가 지체없이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그 정도·방법은 목적물을 수령한 장소, 종류, 수량, 운송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은 거래 관습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취급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하기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통상의 주의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졌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통지의 내용이 하자의 종류 및 대강의 범위 또는 수량부족의 정도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하며 상세한 내용까지 통지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만약 매수인에게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의 통지를 요구하면 오히려 통지의 신속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검사의무와 하자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69조 제1항 제1문 후단)

IV. 檢査時期와 INCOTERMS

賣買慣習인 INCOTERMS의 각 정형거래조건의 경우 매수인의 검사의무는 선적전 검사(PSI)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선적전 검사에서 검사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이 수출국의 강행법규(mandatory rules)에 따라 이행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

PSI는 특히 수출거래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수출상의 경우 선적지에서 검사가 이루어져 조기에 계약일치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이것은 매매당사자간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손해 발생시기와 위험개시시기에 관한 분쟁을 피하게 한다.²⁶⁾

선적전 검사로 주로 SGS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독립된 검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며 운송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물리적으로 수행된다. 검사내용은 매매계약의 검사조건에 따르지만 주로 수량, 품질 및 상태 등이다. 때로는 검사기관이 물품의 품질외에 가격통제기능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²⁷⁾ 즉, 매수인은 검사기관에게 자신의 수입가격을 선적지의 유사물품의 가격과 비교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비록 매수인이 선적전 검사를 약정하더라도 검사내용에 관한 것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SGS가 선적전 검사에 사용될 절차와 원칙을 설명할 브로슈어를 발행하고 있다.²⁸⁾

선적전에 물품을 제3의 기관이 검사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검사기관과, 검사비용부담자를 명기하여야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내용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²⁹⁾

선적전 검사에 관한 문제는 UR협상에서 검토되어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선적전 검사제도와 이에 관한 법규의 운영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상과 검사기관과의 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수출상의 입장에서 보면 선적전 검사가 매우 유리하다. 그렇지만 수입상의

25) INCOTERMS 2000, Introduction 16.

26) *Fuerst Day Lawson Ltd. v. Orion Insurance Co Ltd* (1980), 1 Lloyd's Rep. 656 at 664

27) Leo D'Arcy, Carule Murry and Barbara Cleave, op.cit., p.81

28) SGS, “Preshipment Inspection : Basic Guide for Exporters” 1997. (www.sgs.co.uk); D.I. Guobadia, “Legal Environment and Procedural Rules for Pre-shipment”(1999) 7 I.C.C. L.R. 248

29) 이에 관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Unless otherwise specially instructed by the Buyer, the inspection by SGS prior to shipment shall be considered as final and such inspection shall be for the Buyer's account”

입장에서 보면 검사가 수출지에 이루어질 경우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자사직원의 파견 등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고, 또한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가 수입상의 요구를 충족시킬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운송중 위험에 대한 불안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검사를 목적지까지 연기하기를 원함에 따라 이를 계약서에 명기할 수도 있고, 만약 명기하지 않았다면 준거법에 따라 검사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ISG나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법이 도착지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V. 示唆點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물품검사시기는 매수인의 Claim 제기시기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거래가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며, 정형거래조건 가운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F”그룹과 “C”그룹 모두 선적지 인도조건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아 인도시나 품질의 기준시가 검사시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수입지에 거주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수출지검사를 이행하기가 어렵고, 계약상 검사시기가 하자통지시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수입지 검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지 검사를 위하여 계약서상 명시규정을 둘 수도 있으며, 명시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준거법이 될 CISG, 영미법 및 우리나라 국내법도 물품의 인도과정에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착지 검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지 검사가 가능하다.

본고에서 논자는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가 실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매매당사자간 계약에서 검사시기를 품질의 기준시와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이를 매매계약서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품질의 기준시기는 품질조건(quality terms)에, 검사시기는 검사조건(examination terms)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매매당사자가 선적지 검사를 약정할 경우, 검사기관, 검사장소, 검사시

기, 검사내용, 증빙서류, 검사비용의 부담자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히 검사비용에 관하여는 수출국에서 수출국 정부당국에 의한 검사가 아닌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INCOTERMS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셋째, 만약 매수인이 물품의 계약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그 시기를 Claim 조항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준거법에 따라 1~2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불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통지시기를 물품도착후 x 일 보다 물품검사후 x 일로 표시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 만약 물품도착 후 x 일로 표현한 경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전매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밀봉한 채로 전송될 경우 운송도중에 약정전 일자가 경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에 대한 통지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CISG나 UCC의 입장은 매수인은 불일치를 이유로 계약상 이용할 수 있는 구제권을 상실하는 반면 SGA는 매수인의 구제권 가운데 損害賠償請求權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準據法에 따라 매수인의 권리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섯째, 만약 매매당사자가 계약에서 선적지 인도를 약정한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검사내용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다.

參考文獻

한국민법, 한국상법

Bianca, C.M. & 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Convention, GIUFFRÉ · MILAN, 1987.

D'Arcy L., Murray C., & Cleave B., Schmittoff's Export Trade :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Sweet & Maxwell, 2000.

Farnsworth, E.A., Contracts, 2nd,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Guobadia, D.I., "Legal Environment and Procedural Rules for
Pre-shipment"(1997) 7 I.C.C. I. R 248.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1990

Krizer, A.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1994

Lausing & Hauserman, "A Comparison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o
UNCITRAL'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6 N.C.J. Int'l. L. & Com. Reg. 69(1980)

Schlechtriem, P., "From Hague to Vienna - Progress in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Transnational Law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Studies in Transnational
Economic Law Vol. 2(1982)

Schlechtriem, P., Uniform Sales Law -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Manzsche, 1986

Winship, "Domestica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 Revising UCC Art.
2 in Light of the UN Sales Convention" Loyola L. Rev. (1991)

SGA (1979)

UCC (195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1994)

Uniform Sales Act(190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Uniform Law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64)

ABSTRACT

A Study on the Time of Examination of Buyer in Contract for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 Won Suk

The time of examination of buy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time is related with the period of claim in buyer's aspec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time of delivery,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But the buyer, whose main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importing country, wants to examine the goods in his own country. Therefore in CIF or FOB Contrac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place of examination are divided. Thus the CISG, the Common Law System and the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stipulate the buyer's examination at the destination if the sales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is author, from the buyer's perspectiv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regard to the time of examination when the sales contract is made.

First,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even though the time of delivery is different.

Second, the buyer should clearly indicate the time, the place, the inspector, the particulars and the burden of proof in regard to examination when contracting.

Third, the buyer should also clearly indicate the period of notice for the lack of conformity in Claim Clause of sales contract, which should be counted from the time of examination.

Fourth, the buyer should remember that he may lose the right to rely

on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the seller notice thereof within the stipulated time or reasonable time.

Finally, if the buyer wants, to examine the goods at the place of shipment, it is desirable for the buyer to designa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spection organization like SGS.

Key Words : Time of Examination, CISG
